

의안번호	제 996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2년 03월 08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9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2년 03월 08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소방기구 신설 및 도정현안 등을 반영한 기구 조정 사항을 조직 효율성 및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<기구 조정>

- 신설 : 충북안전체험관(직속기관)

<분장사무 조정>

- 신설
 -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: 재난안전실
- 이관
 - 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: 소방본부 → 충북안전체험관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

제14조제7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4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.

제3장제6절(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절 충북안전체험관

제32조의2(설치) ① 법 제126조 및 「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에 따라 도 관할구역 안에 충북안전체험관(이하 “체험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체험관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.

제32조의3(관장) 체험관에 관장을 두고,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32조의4(소관사무) 체험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·대처·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

2.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·전시에 관한 사항
3. 체험교육 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·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.

[별표 2]

소방서 및 충북안전체험관의 명칭, 위치 및 관할구역(제29조제2항, 제32조의2제2항 관련)

명 칭	위 치	관 할 구 역
충청북도 청주동부소방서	청주시 관 내	청주시 상당구, 청주시 청원구 일원
충청북도 청주서부소방서	청주시 관 내	청주시 흥덕구, 청주시 서원구 일원
충청북도 충주소방서	충주시 관 내	충주시 일원
충청북도 제천소방서	제천시 관 내	제천시 일원
충청북도 보은소방서	보은군 관 내	보은군 일원
충청북도 옥천소방서	옥천군 관 내	옥천군 일원
충청북도 영동소방서	영동군 관 내	영동군 일원
충청북도 증평소방서	증평군 관 내	증평군 일원
충청북도 진천소방서	진천군 관 내	진천군 일원
충청북도 괴산소방서	괴산군 관 내	괴산군 일원
충청북도 음성소방서	음성군 관 내	음성군 일원
충청북도 단양소방서	단양군 관 내	단양군 일원
충북안전체험관	충청북도 관 내	충청북도 일원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의2(재난안전실) 재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4. ~ 16. (생략)</p>	<p>제6조의2(재난안전실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</u></p> <p>5. ~ 17. (현행 제4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)</p>
<p>제14조(소방본부)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<u>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8. ~ 11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4조(소방본부)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7. ~ 10. (현행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6절 충북안전체험관</u></p> <p>제32조의2(설치) ① <u>법 제126조 및 「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에 따라 도 관할구역 안에 충북안전체험관(이하 “체험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</u></p> <p>② <u>체험관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.</u></p> <p>제32조의3(관장) <u>체험관에 관장을</u>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제32조의3(관장) <u>체험관에 관장을</u></p>

<신 설>

두고,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32조의4(소관사무) 체험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·대처·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
2.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·전시에 관한 사항
3. 체험교육 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·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체험교육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

관계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법】

- 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~ ⑥ (생략)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- 제9조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【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】

제5장 소방체험관

- 제14조(설치 등) ① 시·도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주민의 위기 대처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시·도는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체험관을 폐지하거나 통합한다.